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5.

발 의 자 : 이양수 · 김선교 · 엄태영
안철수 · 김태호 · 조경태
강승규 · 김재섭 · 한지아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“유출 등”이라 한다)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,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일어난 유출 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‘개인정보 유출’이라는 용어가 아닌 ‘개인정보 노출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출 등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·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제75조제2항제17호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2항제17호 중 “아니한”을 “아니하거나 은폐·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7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17. 제34조제1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을 위반하여 정보주체 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 을 알리지 <u>아니한</u> 자	17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니하거나 은폐</u> · <u>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린</u> ---
18. ~ 27. (생 략)	18. ~ 2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